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

발의연월일: 2024. 6. 5.

발 의 자:최민희·조인철·박민규

전용기 • 박해철 • 서영교

박수현 · 임미애 · 황정아

박희승 · 강선우 · 송재봉

윤건영 · 이연희 · 허 영

이성윤 • 이수진 • 한민수

진성준 • 문진석 • 모경종

박균택 • 백승아 • 이병진

천준호 · 김 현 · 김문수

정성호 · 이광희 · 강유정

김성환 · 김태년 · 김영배

이정헌 · 정진욱 · 양부남

허성무 · 이해민 의원

(38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가 절차에 따라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위원 후보로 추천했 음에도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는 사상초유의 직무유기와 국회 무시 로 방통위를 파행으로 몰아갔음. 이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의 결정으로 방통위를 좌지우지함으로써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려는 전례 없는 비상식적 폭거임.

실제로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YTN 민영화등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렸음.

이에 대통령이 법의 취지와 의미를 더 이상 훼손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의 추천권이 보다 독립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추천 위원 의 결격사유는 국회가 확인하게 하고, 이를 거쳐 추천이 이뤄지면 대 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강제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위촉을 거부해 파행을 겪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국회가 결격사유를 확인하게 하고국회 추천이 이뤄지면 대통령이 즉시 위촉하도록 강제하고자 함(안 제18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회는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기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즉시임명하여야 한다.

제1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회의장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기 전에 제19조제1항에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국회의장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즉시 위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명 등) ①・② (생 략)	제5조(임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국회는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기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하
	며,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사
	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
치 등) ① ~ ③ (생 략)	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국회의장과 국회의 소관 상
	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위원
	을 추천하기 전에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국회의장과 국회
	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사
	람을 즉시 위촉하여야 한다.
<u>④</u> ~ <u>⑦</u> (생 략)	<u>⑤</u> ~ <u>⑧</u> (현행 제4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